

의안번호	제731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상정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#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발의자 : 이상정, 이상식, 김종필,  
김현문, 박지현, 이동우,  
안치영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의료원은 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병원임.
- 즉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에 충청북도 내 의료원이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인해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, 이에 대한 비용 보조와 더불어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설치와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의 충당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.  
(안 제7조의2)

## 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붙임
- 협의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
-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도 감사담당부서”를 “충청북도 감사담당 부서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기금과 보조금 등) ①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② 충청북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정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, 충청북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안
<p>제3조(임원) ① ~ ③ (생   략)</p> <p>④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(任免)하며, <u>도 감사담당부서</u>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3조(임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 <u>충청북도 감사담당 부서</u>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의2(기금과 보조금 등) ① 의</u> <u>료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</u> <u>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</u> <u>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</u> <u>아 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충청북도는 제1항에 따른 기</u> <u>금의 조성</u>과 <u>의료원의 기본시설</u> <u>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</u> <u>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</u> <u>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</u> <u>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,</u> <u>충청북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</u> <u>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</u> <u>금 및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</u> <u>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</u> <u>정한다.</u></p>

## 관계 법령

### □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7조(사업)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지역주민의 진료사업
  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(이하 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이라 한다)
  3. 삭제 <2015. 1. 28.>
  4. 의료인·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
  5.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
  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
  7.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
  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
-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·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·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7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·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·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8.>

⑤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제18조(재원)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, 제17조에 따른 보조금·출연금 및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#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○ 사유

- 본 개정안은, 안 제7조의2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설치와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의 충당을 위한 충청북도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
-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요구되지만, 현 시점에서는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- 이에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